

# 최종공표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을 다루는  
윤리기준의 개정사항

2025년 1월



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AN IFEA BOARD



## **PIOB Certification of *“Using the Work of an External Expert”***

The Public Interest Oversight Board (PIOB) has overseen the standard-setting process throughout the full development cycle of the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IESBA) *“Using the Work of an External Expert”* (the ‘Standard’).

The recommendations and the public interest issues, raised by the PIOB and provided to the IESBA throughout the standard-setting process, are available on the PIOB website.

The IESBA has provided a written statement that the Standard has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agreed due process and is responsive to the public interest, informed by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the Public Interest Framework (PIF),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the standard-setting process, and which is available in the PIOB website<sup>1</sup>.

The PIOB considers that the Standard has been develop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greed due process. The PIOB also considers that the Standard is responsive to the public interest, informed by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the PIF.

January 2025

---

<sup>1</sup> [Public Interest Framework](#)

Copyright © January 2025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All rights reserved.

This publication may be downloaded for personal, non-commercial use or purchased from the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IESBA®) website: [www.ethicsboard.org](http://www.ethicsboard.org). Written permission from IFAC is required to reproduce, translate, store or transmit, or to make other similar uses of, this document, save for where the document is being used for individual, non-commercial use only. The structures and processes that support the operations of the IAASB are facilitated by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thics and Audit™ (IFEATM).

For copyright, trademark, and permissions information, please go to Permissions or contact [Permissions@ifac.org](mailto:Permissions@ifac.org).

국제회계사연맹(이하 IFAC)에서 2025년 1월에 영문으로 발간한 본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독립성기준 포함)(IESSA) 및 지속가능성인증/보고와 관련된 윤리기준의 기타 개정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2025년 6월에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며 IFAC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IFAC의 모든 간행물의 승인된 문구를 IFAC에서 영어로 발간한 것이다. IFAC은 번역의 정확성 및 완전성과 그에 따르는 조치에 대해 책임이 없다.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독립성기준 포함)(IESSA) 및 지속가능성인증/보고와 관련된 윤리기준의 기타 개정사항」의 영문문구 © 2025 by IFAC. All rights reserved.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독립성기준 포함)(IESSA) 및 지속가능성인증/보고와 관련된 윤리기준의 기타 개정사항」의 한글문구 © 2025 by IFAC. All rights reserved.

원제: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 (including International Independence Standards) and Other Revisions to the Code Relating to Sustainability Assurance and Reporting

이 문서를 재생산, 보관, 전송 혹은 이와 유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Permissions@ifac.org](mailto:Permissions@ifac.org)에 연락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문서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sup>®</sup> (IESBA<sup>®</sup>)에 의해 개발되고 승인되었습니다.

##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는 독립적인 글로벌 기준 제정 위원회이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사명은 사업 및 조직의 윤리적 행동과 재무 및 비재무 정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위한 초석으로서, 고품질의 국제윤리기준(독립성 포함)을 제정하여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와 함께, 국제윤리기준위원회는 [국제윤리감사재단](#) (IFEA)을 구성한다. [공익감독위원회](#) (PIOB)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및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활동과 각 위원회가 제정하는 기준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감독한다.

## DISCLAIMER

본 국문번역본은 참고목적으로 제공하는 번역 초안의 성격으로서 오타자, 용어 등에 대한 추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본 국문번역본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제한된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국문번역본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영문 버전이 우선합니다.

## 목차

220(변경 전·후 내용 포함)*.....	6
290(신규) .....	7
320(변경 전·후 내용 포함)*.....	15
390(신규) .....	16
5390(신규).....	30
용어정의* .....	44
타 기준의 개정(변경 전·후 내용 포함)* .....	45
시행일 .....	50

\* 본 최종 공표 기준의 목적상, 기존 윤리기준에 대한 참조는 가장 최근에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승인한 개정사항이 포함된 2024년판 국제윤리기준위원회 편람을 기준으로 한다.

## 220(변경 전·후 내용 포함)

### 정보의 작성 및 제출

...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 타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R220.7** 외부전문가가 아닌 (소속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타인 또는 타 조직이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공인회계사는 전문가적 판단을 발휘하여 문단 R220.4에 제시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220.7 A1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90에 규정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220.7 A24 공인회계사가 타인이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려할 요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 업무를 수행한 개인 또는 조직의 평판 및 전문성, 그리고 이러한 개인 또는 조직에 가용한 자원
- 업무를 수행한 개인이 관련 전문직 기준 및 윤리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이러한 정보는 업무를 수행한 개인 또는 조직과 유지해온 관계 또는 이러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한 타인과의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 290(신규)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 개요

- 290.1 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120 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290.2 공인회계사는 소속조직을 위한 전문업무의 수행에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강령, 특히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 290.3 290은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념체계 적용과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290.4 A1 공인회계사가 본인이 수행하는 전문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불충분한 경우 성실 강령 및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험이 발생한다.
- 290.4 A2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전문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 역량, 공정성을 갖춘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해당 전문업무에 활용하는 것이다.
- 290.4 A3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전문업무를 지원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이미 확립된 분야 또는 새로운 분야의 업무일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복잡한 금융상품, 토지 및 건물, 플랜트 및 기계, 보석, 예술품, 골동품, 무형자산,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 등의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 사업 결합에서 인수한 부채, 소송 또는 소송이 제기될 위협에 따른 부채, 환경 부채, 복잡한 금융상품, 부지 정화 부채, 보험 계약 또는 직원 복리후생제도와 관련된 부채 등의 부채에 대한 가치평가
  -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 대기, 물, 토양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측정
  - 회사의 탈탄소화 계획에 대한 미래예측정보의 평가
  - 탄소 또는 생물 다양성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상쇄 메커니즘 적용에 대한 평가
  -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한 원칙에 따라 설계된 제품 및 재료의 가치평가
  - 석유 및 가스 매장량 추정
  - 세금 및 노동 관련 법규 등 계약 및 법규의 해석

-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 등 IT 시스템의 진단 및 평가

290.4 A4 290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공인회계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인회계사의 지시, 감독, 검토 대상인 개인 또는 조직(예: 하도급 업체)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 (b) 외부 정보 출처인 개인 또는 조직이 제공한 정보를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 출처에는 예를 들어 지역별 주당 근무시간 및 보수 등의 고용통계 정보, 부동산 가격, 차량 유형별 탄소 배출량, 생명표(mortality table) 또는 기타 일반 용도의 데이터세트 등의 산업 및 기타 벤치마킹 데이터 또는 연구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와 계약조건 합의

**R290.5**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를 전문업무에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소속조직의 정책과 절차를 고려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식별한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부전문가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와 계약조건에 합의해야 한다.

290.5 A1 계약조건에 합의하기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목적 및 시기
- 해당 업무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계획한 접근방식
- 다음 사항에 관한 기대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 및 해당 업무를 위한 투입자료의 비밀유지
  - 외부전문가가 제공할 정보 및 해당 정보의 성격
  - 외부전문가가 완료한 업무의 내용 및 형식(해당 업무에 대한 가정 및 제한사항 포함)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 외부전문가가 업무수행 시 알게 된, 공인회계사의 소속조직이 행한, 또는 소속조직을 위해 일하거나 소속조직의 지시를 받는 지배기구, 경영진이나 기타 관련자가 행한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290.5 A2 공인회계사가 특정 전문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성, 역량 또는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성실, 공정 및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 자기검토위협, 유착위협 또는 변호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 평가

**R290.6** 공인회계사는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290.6 A1 적격성은 외부전문가가 보유한 전문성의 성격 및 수준과 관련이 있다.
- 290.6 A2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의 자격, 교육, 훈련, 경험 및 평판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과 관련이 있거나 그에 부합하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규제기관 또는 기타 기관의 감독을 받는지 여부 및 그러한 경우 외부전문가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의 적격성과 관련하여 규제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 조치를 발표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법규 요구사항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전문직 기준의 적용 대상이거나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 또는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원칙 또는 관행을 따르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사용된 투입자료, 가정, 방법론을 포함하여 자신의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 R290.7** 공인회계사는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290.7 A1 역량은 외부전문가가 전문업무의 상황에서 적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 290.7 A2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R290.8** 공인회계사는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290.8 A1 공정성은 편견, 이해상충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당한 의존이 외부전문가의 전문가적 판단 또는 사업적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
- 290.8 A2 외부전문가의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에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견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성공보수를 부과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경우 해당 보수의 근거
  - 외부전문가가 외부전문가의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이전에 내린 판단 또는 수행한 업무를 평가하거나 이를 활용하는지 여부

- 290.8 A3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은 고용의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전문가를 직접 고용하는 회사이며, 소속조직을 지배할 수 있거나 기타 관련성이 있는 다른 회사로 확대되지 않는다.
- 290.8 A4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는 중요한 재무적 이해관계(재무정보, 비재무정보 및 의사결정과 관련한 보상, 보수 및 인센티브 약정에 기인하는 재무적 이해관계 등)를 포함한다.
- 290.8 A5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자기검토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이전에 내린 판단 또는 수행한 업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안에 관해 회사에 자문을 제공한 바 있는 경우
  - 외부전문가가 회사를 위해 생성한 자료나 기타 정보 또는 설계, 개발, 실행, 운영, 관리, 모니터링,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한 IT 시스템이 외부전문가의 해당 업무 수행에 활용되거나 해당 업무의 대상이 된 경우
- 290.8 A6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의 직업, 법률, 규정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정한 조건, 정책 및 절차의 존재 여부(외부전문가가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에서 윤리기준 발행 책임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윤리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포함)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범위
  - 외부전문가가 사용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의 존재 여부 및 적절성
- 290.8 A7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의도된 목적에 맞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격이 있는 임직원 또는 공인회계사 소속조직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음
  - 외부전문가에게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예: 이해상충으로부터 업무를 분리하는 조치 실행)를 취하도록 요청함
  - 외부전문가의 업무 중 위협을 초래하는 부분을 재조정하거나 다른 외부전문가에게 재배정함

### 정보의 출처

- 290.9 A1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다.
- 외부전문가가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 또는 경험
  -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인회계사 소속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문의
  -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 및 사업 활동 등 배경에 관해 외부전문가와 논의

- 외부전문가의 전문가 기구 또는 산업협회에 문의
- 외부전문가가 작성하고 공인된 출판사나 공인된 저널 또는 기타 매체에 게재된 기사, 논문 또는 저서
- 외부전문가와 관련된 소송절차 등 공개된 기록
- 외부전문가와 소속조직 또는 회사 간의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에 관해 공인회계사 소속조직의 경영진 및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
- 공인회계사 소속조직의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

####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 평가 시 추가 고려사항

- 290.10. A1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려면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합리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제3자 테스트를 활용해야 한다.
- 290.10 A2 외부전문가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미 수행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70은 이러한 압력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데 있어 관련이 있다.

#### 새로운 정보 또는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 R290.11** 새로운 정보 또는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에 대한 결론

- R290.12**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 (a)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적격성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b)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 (c)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없는,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290.12 A1 공인회계사가 이러한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며, 이는 안전장치의 적용으로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

- 290.13 A1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만족스럽게 결론을 내린 경우에도,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함에 따른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 위험의 식별

290.14 A1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의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및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이기적위험

-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의 결론 및 발견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 공인회계사가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복수의 외부전문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부당한 의존을 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평가할 시간 또는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

(b) 자기검토위험

- 공인회계사가 이전에 공인회계사가 수행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제공한 판단에 의존하는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본인의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c) 변호위험

-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의 소속조직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결론에 대한 알려진 편견을 가진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도모하는 경우

(d) 유착위험

-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와 긴밀한 친분 관계에 있는 경우

(e) 압력위험

- 외부전문가의 권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도록 압력을 받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내부 또는 외부의 목표 및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특정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도록 압력을 받는 경우

### 위험의 평가

290.15 A1 이러한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목적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업무의 성격
-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과 관련된 공인회계사의 감독
- 외부전문가가 사용하는 자료, 가정 및 기타 투입자료, 방법의 적절성 및 투명성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 그리고 해당 업무가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능력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기술적 업무수행 기준이나 기타 직업적 관행 또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관행 또는 법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둘 이상의 당사자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중요하게 상이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의 결론 또는 발견사항 등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와 기타 정보의 일관성
- 외부전문가의 접근방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료검토 학술 연구 등 기타 증거의 가용성
-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 또는 비용으로 인해 공인회계사의 소속조직이 외부전문가의 결론 또는 발견사항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여부

### 위협에 대한 대처

290.16 A1 유착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다른 외부전문가를 식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90.16 A2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격이 있는 임직원 또는 공인회계사 소속조직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추가 투입자료를 확보하거나,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의도된 목적에 적절한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다른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재수행함
- 업무 완료를 위한 추가 시간 또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공인회계사 소속조직의 경영진과 합의함

### 기타 사항

#### 신규 분야 또는 영역의 외부전문가

290.17 A1 신규 분야 또는 영역의 전문성은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분야에는 다수의 전문영역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분야 또는 영역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290.17 A2 문단 290.6 A2에 제시된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평가와 관련된 일부 요소에 대한 정보가 신규 분야 또는 영역에서는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전문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없거나, 전문직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신규 분야에 전문기관이 설립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신규 분야와 유사한 분야 또는 기존 분야에서의 외부전문가의 경험이 신규 분야에서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290.18 A1 적절한 경우, 공인회계사는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다음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부전문가의 활용 목적 및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
- 전문업무 수행에서 공인회계사와 외부전문가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공인회계사의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험과 그 대처 방법

*문서화*

290.19 A1 공인회계사는 다음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 결과로 도출된 결론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함에 있어 공인회계사가 식별한 중요한 위험 및 해당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
- 외부전문가와와의 모든 중요한 논의의 결과

## 320(변경 전·후 내용 포함)

### 업무수입

...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R320.10** 공인회계사는 전문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업무 활용이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20.10 A1 320의 목적상,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는 제외된다.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90에 제시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320.10 A24 공인회계사가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려할 요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전문가의 평판 및 전문성, 그리고 해당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 해당 전문가가 관련 전문직 기준 및 윤리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이러한 정보는 전문가와 유지해온 관계 또는 이러한 전문가에 대한 타인과의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 기타 고려사항

320.12 A1 공인회계사가 전문가의 업무 또는 기술 결과물의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내에서 그러한 활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 390(신규)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 개요

- 390.1 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120 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390.2 공인회계사는 전문서비스의 수행에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강령, 특히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 390.3 390은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념체계 적용과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5390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동일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되는 기타 전문서비스에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것을 다룬다. 기타 전문직 기준은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다룰 수 있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390.4 A1 공인회계사가 본인이 수행하는 전문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불충분한 경우 성실 강령 및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 390.4 A2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전문서비스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 역량, 공정성을 갖춘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해당 전문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다.
- 390.4 A3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를 지원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이미 확립된 분야 또는 새로운 분야의 업무일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복잡한 금융상품, 토지 및 건물, 플랜트 및 기계, 보석, 예술품, 골동품, 무형자산,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 등의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 사업 결합에서 인수한 부채, 소송 또는 소송이 제기될 위협에 따른 부채, 환경 부채, 복잡한 금융상품, 부지 정화 부채, 보험 계약 또는 직원 복리후생제도와 관련된 부채 등의 부채에 대한 가치평가
  -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 대기, 물, 토양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측정
  - 회사의 탈탄소화 계획에 대한 미래예측정보의 평가
  - 탄소 또는 생물 다양성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상쇄 메커니즘 적용에 대한 평가
  -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한 원칙에 따라 설계된 제품 및 재료의 가치평가

- 석유 및 가스 매장량 추정
- 세금 및 노동 관련 법규 등 계약 및 법규의 해석
-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 등 IT 시스템의 진단 및 평가

390.4 A4 390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의뢰인의 재무 및 비재무정보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뢰인이 고용하거나 계약한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이러한 업무는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로 간주된다.
- (b) 공인회계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인회계사의 지시, 감독, 검토 대상인 개인 또는 조직(예: 하도급 업체)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 (c) 외부 정보 출처인 개인 또는 조직이 제공한 정보를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 출처에는 예를 들어 지역별 주당 근무시간 및 보수 등의 고용통계 정보, 부동산 가격, 차량 유형별 탄소 배출량, 생명표(mortality table) 또는 기타 일반 용도의 데이터세트 등의 산업 및 기타 벤치마킹 데이터 또는 연구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포함된다.

390.4 A5 390은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공인회계사가 수행한 전문서비스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공인회계사의 평가,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영향은 다른 전문직 기준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 외부전문가와와의 계약조건 합의

### 전체 전문서비스

**R390.5**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를 전문서비스에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식별한 경우, 공인회계사는 법률, 규정 또는 기타 전문직 기준에서 달리 다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와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에 합의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 (b) 감사, 검토 또는 기타 인증업무의 맥락에서:
  - (i)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평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서면으로 정보 제공
  - (ii) 감사, 검토 또는 기타 인증보고기간부터 해당 보고서 발행 시까지 제공된 정보의 변경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겠다는 외부전문가의 약속서

390.5 A1 계약조건에 합의하기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목적 및 시기
- 해당 업무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계획한 접근방식
- 다음 사항에 관한 기대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 및 해당 업무를 위한 투입자료의 비밀유지
- 외부전문가가 제공할 정보 및 해당 정보의 성격
- 외부전문가가 완료한 업무의 내용 및 형식(해당 업무에 대한 가정 및 제한사항 포함)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 외부전문가가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의뢰인이 행한, 또는 의뢰인을 위해 일하거나 의뢰인의 지시를 받는 지배기구, 경영진이나 기타 관련자가 행한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390.5 A2 공인회계사가 특정 전문서비스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성, 역량 또는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성실, 공정 및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 자기검토위협, 유착위협 또는 변호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 평가

#### 전체 전문서비스

**R390.6** 공인회계사는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390.6 A1 적격성은 외부전문가가 보유한 전문성의 성격 및 수준과 관련이 있다.

390.6 A2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의 자격, 교육, 훈련, 경험 및 평판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과 관련이 있거나 그에 부합하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규제기관 또는 기타 기관의 감독을 받는지 여부 및 그러한 경우 외부전문가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의 적격성과 관련하여 규제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 조치를 발표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법규 요구사항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전문직 기준의 적용 대상이거나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 또는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원칙 또는 관행을 따르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사용된 투입자료, 가정, 방법론을 포함하여 자신의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R390.7** 공인회계사는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390.7 A1 역량은 외부전문가가 전문서비스의 상황에서 적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390.7 A2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R390.8** 공인회계사는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390.8 A1 공정성은 편견, 이해상충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당한 의존이 외부전문가의 전문가적 판단 또는 사업적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
- 390.8 A2 외부전문가의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에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
  -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견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성공보수를 부과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경우 해당 보수의 근거
  - 외부전문가가 외부전문가의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이전에 내린 판단 또는 수행한 업무를 평가하거나 이를 활용하는지 여부
- 390.8 A3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은 고용의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전문가를 직접 고용하는 회사이며, 소속조직을 지배할 수 있거나 기타 관련성이 있는 다른 회사로 확대되지 않는다.
- 390.8 A4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자기검토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이전에 내린 판단 또는 수행한 업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안에 관해 회사에 자문을 제공한 바 있는 경우
  - 외부전문가가 회사를 위해 생성한 자료나 기타 정보 또는 설계, 개발, 실행, 운영, 관리, 모니터링,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한 IT 시스템이 외부전문가의 해당 업무 수행에 활용되거나 해당 업무의 대상이 된 경우
- 390.8 A5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의 직업, 법률, 규정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정한 조건, 정책 및 절차의 존재 여부(외부전문가가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에서 윤리기준 발행 책임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윤리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포함)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범위
  - 외부전문가가 사용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의 존재 여부 및 적절성
- 390.8 A6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의도된 목적에 맞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격이 있는 임직원 또는 공인회계사 소속 회계법인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음

- 외부전문가에게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예: 이해상충으로부터 업무를 분리하는 조치 실행)를 취하도록 요청함
- 외부전문가의 업무 중 위협을 초래하는 부분을 재조정하거나 다른 외부전문가에게 재배정함

#### 정보의 출처

390.9 A1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다.

- 외부전문가가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 또는 경험
-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인회계사 소속 회계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문의
-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 및 사업 활동 등 배경에 관해 외부전문가와 논의
- 외부전문가의 전문가 기구 또는 산업협회에 문의
- 외부전문가가 작성하고 공인된 출판사나 공인된 저널 또는 기타 매체에 게재된 기사, 논문 또는 저서
- 외부전문가와 관련된 소송절차 등 공개된 기록
- 외부전문가와 의뢰인 또는 회사 간의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에 관해 의뢰인 및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
- 공인회계사 소속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 평가 시 추가 고려사항

390.10 A1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려면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합리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제3자 테스트를 활용해야 한다.

390.10 A2 외부전문가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미 수행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70은 이러한 압력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데 있어 관련이 있다.

#### 감사업무, 검토업무 및 제5부의 범위 외 기타 인증업무에 대한 추가 공정성 고려사항

390.11 A1 감사업무, 검토업무 또는 제5부의 범위 외 기타 인증업무에 활용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따라서 문단 R390.12~R390.19에서는 문단 R390.8에 따라 그러한 업무에서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추가 조치를 제시한다.

공적법인이 아닌 의뢰인을 위한 감사 및 검토업무, 그리고 제5부의 범위 외 기타 모든 인증업무

**R390.12**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 (B)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 (C) 감사, 검토 또는 기타 인증보고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
  - (a)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모든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 (b)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외부전문가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 (c)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간에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업무

**R390.13** 공인회계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 (b) 감사, 검토 또는 기타 인증보고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간의 추가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

390.13 A1 문단 R390.13에 명시된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 외에도, 문단 R390.14는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간의 다른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을 제시한다.

390.13 A2 외부전문가로부터 추가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직업상 수행하는 실무의 규모
- 외부전문가가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
- 외부전문가가 해당 직종에 종사한 기간
- 외부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의 복잡성
-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외부전문가가 직업상 수행하는 실무의 규모가 클수록, 업무의 범위가 넓을수록, 또는 해당 직종에 종사한 기간이 길수록,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간의 추가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공적법인인 의뢰인을 위한 감사 및 검토업무

**R390.14**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 (B)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 (C) 감사 또는 검토보고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

- (a)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모든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 (b)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에 제공한 모든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단, 해당 대출 또는 보증이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해당하는 경우)과 해당 회사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c) 회사가 은행 또는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단, 해당 대출 또는 보증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d) 회사가 은행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단, 해당 대출 또는 보증이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해당하는 경우)과 해당 회사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e)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또는 그 경영진 간의 모든 긴밀한 사업관계. 단,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해당하는 경우)과 회사 또는 그 경영진에게 그러한 재무적 이해관계(있는 경우)가 중요하지 않고 해당 사업관계가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f)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간에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업무
- (g)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거나 최근 받은 모든 보수나 성공보수, 또는 보수나 기타 유형의 보상에 대한 의존성
- (h)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 또는 기타 혜택. 단, 해당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이 사소하고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 (i)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간의 모든 실제 또는 잠재적 소송
- (j) 외부전문가가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현재 보유 중이거나 이전에 보유했던 모든 직위
- (k) 외부전문가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 소속조직의 경영진이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또는 공인회계사가 의견이나 결론을 표명할 대상인 회사의 재무 또는 비재무 정보나

그러한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으로서 현재 보유 중이거나 이전에 보유했던 모든 직위

- (l)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를 옹호한 이전의 모든 공개적 진술
- (m) 외부전문가 소속조직의 지배주주(있는 경우)와 회사 간의 모든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의 성격과 범위
- (n)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외부전문가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간 관계의 기간과 관련하여:

- (o) 관계가 지속된 기간

외부전문가팀과 관련한 고려사항 및 의뢰인이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의 고려사항

모든 감사업무, 검토업무 및 제5부의 범위 외 기타 인증업무

**R390.15** 외부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경우 문단 R390.12~R390.14에 명시된 정보를 외부전문가팀의 모든 구성원이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해야 한다.

**R390.16** 공인회계사의 의뢰인이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 공인회계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 (B) 의뢰인과 관련하여
  - (C) 감사, 검토 또는 기타 인증보고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

- (a)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모든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 (b)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의뢰인과 가질 수 있는 모든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 (c)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의뢰인 간에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업무

**R390.17** 공인회계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 (b) 감사, 검토 또는 기타 인증보고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의뢰인 간의 추가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

- 390.17 A1 문단 R390.17에 명시된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 외에도, 문단 R390.14는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의뢰인 간의 다른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을 제시한다.
- 390.17 A2 외부전문가로부터 추가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직업상 수행하는 실무의 규모
  - 외부전문가가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
  - 외부전문가가 해당 직종에 종사한 기간
  - 의뢰인이 공적법인인지 여부
  - 의뢰인과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간 관계의 성격
  -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 및 복잡성
  - 외부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의 복잡성
  -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외부전문가가 직업상 수행하는 실무의 규모가 클수록, 업무의 범위가 넓을수록, 또는 해당 직종에 종사한 기간이 길수록,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간의 추가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390.17 A3 업무 상황상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의뢰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의뢰인에게 문의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의뢰인 간의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

- 390.18 A1 해당하는 경우 문단 R390.12~R390.17에 따라 공개된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으로 인해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390.18 A2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문단 390.8 A5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다음이 포함된다.
- 재무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가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해당하는 경우)에 중요한지 여부
  - 재무적 이해관계로 인해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해당하는 경우)이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해당하는 경우)과 회사 또는 그 경영진 간 긴밀한 사업관계의 중요성 또는 유의성

-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거나 최근 받은 모든 보수의 유의성
- 외부전문가팀 내 개인의 역할
-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받은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의 성격 및 가치
- 소송의 중요성 또는 유의성 및 소송이 외부전문가가 회사에서 이전에 수행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회사를 떠난 이후의 기간
- 회사에서 외부전문가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 소속조직의 경영진이 보유한 직위
-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를 옹호한 공개적 진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옹호의 성격

390.18 A3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외부전문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긴밀한 사업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청
- 관련된 개인을 외부전문가팀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
- 회사가 제공하는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을 거절할 것을 요청

390.18 A4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문단 390.8 A6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외부전문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남은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만큼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처리할 것을 요청
- 긴밀한 사업관계의 유의성을 줄일 것을 요청
-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 또는 공인회계사가 의견이나 결론을 표명할 대상인 회사의 재무 또는 비재무 정보나 그러한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을 관련된 개인이 다루지 않도록, 해당 개인의 책임을 구조화할 것을 요청
-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요청

#### *새로운 정보 또는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 전체 전문서비스

**R390.19** 새로운 정보 또는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

#### 감사, 검토 및 기타 인증업무

**R390.20** 공인회계사는 감사, 검토 또는 기타 인증보고기간부터 해당 보고서의 발행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단 R390.5(b)(ii)에 따라 커뮤니케이션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에 대한 결론

#### 전체 전문서비스

**R390.21**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 (a)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적격성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b)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 (c)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없는,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90.21 A1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적격성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법규상의 비밀유지 제한으로 인해 문단 R390.12~R390.17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외부전문가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나 소속조직에 관해 문단 R390.12~R390.17에서 요청하는 특정 정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가 이러한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390.21 A2 공인회계사가 이러한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며, 이는 안전장치의 적용으로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

#### 전체 전문서비스

390.22 A1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만족스럽게 결론을 내린 경우에도,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함에 따른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 위협의 식별

390.23 A1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의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및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a) 이기적위협
  -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의 결론 및 발견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 공인회계사가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복수의 외부전문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부당한 의존을 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평가할 시간 또는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

- (b) 자기검토위협
  - 공인회계사가 이전에 공인회계사가 수행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제공한 판단에 의존하는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c) 변호위협
  - 공인회계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결론에 대한 알려진 편견을 가진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도모하는 경우
- (d) 유착위협
  -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와 긴밀한 친분 관계에 있는 경우
- (e) 압력위협
  - 외부전문가의 권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도록 압력을 받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내부 또는 외부의 목표 및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특정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도록 압력을 받는 경우

### 위협의 평가

390.24 A1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목적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서비스의 성격
-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과 관련된 공인회계사의 감독
- 외부전문가가 사용하는 자료, 가정 및 기타 투입자료, 방법의 적절성 및 투명성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 그리고 해당 업무가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능력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기술적 업무수행 기준이나 기타 직업적 관행 또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관행 또는 법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둘 이상의 당사자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중요하게 상이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의 결론 또는 발견사항 등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와 기타 정보의 일관성
- 외부전문가의 접근방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료검토 학술 연구 등 기타 증거의 가용성
-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 또는 비용으로 인해 공인회계사 소속 회계법인이 외부전문가의 결론 또는 발견사항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여부

### 위협에 대한 대처

390.25 A1 유착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다른 외부전문가를 식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390.25 A2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격이 있는 임직원 또는 공인회계사 소속 회계법인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추가 투입자료를 확보하거나,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의도된 목적에 적절한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다른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재수행함
- 업무 완료를 위한 추가 시간 또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뢰인과 합의함

### 기타 사항

#### 신규 분야 또는 영역의 외부전문가

390.26 A1 신규 분야 또는 영역의 전문성은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분야에는 다수의 전문영역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분야 또는 영역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390.26 A2 문단 390.6 A2에 제시된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평가와 관련된 일부 요소에 대한 정보가 신규 분야 또는 영역에서는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전문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없거나, 전문직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신규 분야에 전문기관이 설립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신규 분야와 유사한 분야 또는 기존 분야에서의 외부전문가의 경험이 신규 분야에서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390.27 A1 적절한 경우, 공인회계사는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다음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부전문가의 활용 목적 및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
- 전문서비스 수행에서 공인회계사와 외부전문가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공인회계사의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과 그 대처 방법

### 문서화

**R390.28** 공인회계사는 해당하는 경우 문단 R390.12~R390.17에 명시된 정보를 외부전문가로부터 서면으로 얻어야 한다.

390.29 A1 공인회계사는 다음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 결과로 도출된 결론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함에 있어 공인회계사가 식별한 중요한 위협 및 해당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
- 외부전문가와 모든 중요한 논의의 결과

## 5390(신규)

참고: 5390은 국제지속가능성인증 윤리기준™(독립성™ 포함)(IESSA) 및 지속가능성인증/보고와 관련된 윤리기준의 기타 개정사항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므로, 최종 공표된 해당 기준과 함께 읽어야 한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 개요

- 5390.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 SAP)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390.2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전문서비스의 수행에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강령, 특히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 5390.3 5390은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념체계 적용과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기타 전문직 기준은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지속가능성인증인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다룰 수 있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390.4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본인이 수행하는 전문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불충분한 경우 성실 강령 및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 5390.4 A2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전문서비스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 역량, 공정성을 갖춘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해당 전문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다.
- 5390.4 A3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제공하는 전문서비스를 지원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이미 확립된 분야 또는 새로운 분야의 업무일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복잡한 금융상품, 토지 및 건물, 플랜트 및 기계, 보석, 예술품, 골동품, 무형자산,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 등의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 사업 결합에서 인수한 부채, 소송 또는 소송이 제기될 위협에 따른 부채, 환경 부채, 복잡한 금융상품, 부지 정화 부채, 보험 계약 또는 직원 복리후생제도와 관련된 부채 등의 부채에 대한 가치평가
  -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 대기, 물, 토양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측정
  - 회사의 탈탄소화 계획에 대한 미래예측정보의 평가

- 탄소 또는 생물 다양성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상쇄 메커니즘 적용에 대한 평가
-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한 원칙에 따라 설계된 제품 및 재료의 가치평가
- 석유 및 가스 매장량 추정
- 세금 및 노동 관련 법규 등 계약 및 법규의 해석
-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 등 IT 시스템의 진단 및 평가
- 금융상품 또는 탄소배출권과 같은 특정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
-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 또는 분류 체계에 대한 고려
-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가 환경, 경제, 사회·문화적 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또는 측정

5390.4 A4 5390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재무 및 비재무정보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뢰인이 고용하거나 계약한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이러한 업무는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로 간주된다.
- (b) 지속가능성인증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인증인의 지시, 감독, 검토 대상인 개인 또는 조직(예: 하도급 업체)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 (c) 외부 정보 출처인 개인 또는 조직이 제공한 정보를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 출처에는 예를 들어 지역별 주당 근무시간 및 보수 등의 고용통계 정보, 부동산 가격, 차량 유형별 탄소 배출량, 생명표(mortality table) 또는 기타 일반 용도의 데이터세트 등의 산업 및 기타 벤치마킹 데이터 또는 연구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포함된다.

5390.4 A5 5390은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수행한 전문서비스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인증인의 평가, 그리고 인증인이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영향은 다른 전문직 기준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 외부전문가와와의 계약조건 합의

### 전체 전문서비스

**R5390.5**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를 전문서비스에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식별한 경우, 인증인은 법률, 규정 또는 기타 전문직 기준에서 달리 다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와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에 합의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 (b) 동일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지속가능성 또는 기타 인증업무의 맥락에서:
  - (i)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인증인의 평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서면으로 정보 제공

- (ii) 동일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지속가능성인증 또는 기타 인증보고기간부터 해당 보고서 발행 시까지 제공된 정보의 변경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겠다는 외부전문가의 약속서

5390.5 A1 계약조건에 합의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목적 및 시기
- 해당 업무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계획한 접근방식
- 다음 사항에 대한 기대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 및 해당 업무를 위한 투입자료의 비밀유지
  - 외부전문가가 제공할 정보 및 해당 정보의 성격
  - 외부전문가가 완료한 업무의 내용 및 형식(해당 업무에 대한 가정 및 제한사항 포함)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 외부전문가가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행한, 또는 의뢰인을 위해 일하거나 의뢰인의 지시를 받는 지배기구, 경영진이나 기타 관련자가 행한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5390.5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특정 전문서비스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성, 역량 또는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성실, 공정 및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험, 자기검토위험, 유착위험 또는 변호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 평가

#### 전체 전문서비스

**R5390.6**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외부전문가가 인증인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5390.6 A1 적격성은 외부전문가가 보유한 전문성의 성격 및 수준과 관련이 있다.

5390.6 A2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의 자격, 교육, 훈련, 경험 및 평판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과 관련이 있거나 그에 부합하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규제기관 또는 기타 기관의 감독을 받는지 여부 및 그러한 경우 외부전문가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의 적격성과 관련하여 규제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 조치를 발표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법규 요구사항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전문적 기준의 적용 대상이거나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 또는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원칙 또는 관행을 따르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사용된 투입자료, 가정, 방법론을 포함하여 자신의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R5390.7**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외부전문가가 인증인의 목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5390.7A1 역량은 외부전문가가 전문서비스의 상황에서 적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5390.7 A2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R5390.8**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외부전문가가 인증인의 목적에 필요한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5390.8 A1 공정성은 편견, 이해상충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당한 의존이 외부전문가의 전문가적 판단 또는 사업적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

5390.8 A2 외부전문가의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에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견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성공보수를 부과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경우 해당 보수의 근거
- 외부전문가가 외부전문가의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이전에 내린 판단 또는 수행한 업무를 평가하거나 이를 활용하는지 여부

5390.8 A3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은 고용의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전문가를 직접 고용하는 회사이며, 소속조직을 지배할 수 있거나 기타 관련성이 있는 다른 회사로 확대되지 않는다.

5390.8 A4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자기검토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이전에 내린 판단 또는 수행한 업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안에 관해 회사에 자문을 제공한 바 있는 경우
- 외부전문가가 회사를 위해 생성한 자료나 기타 정보 또는 설계, 개발, 실행, 운영, 관리, 모니터링,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한 IT 시스템이 외부전문가의 해당 업무 수행에 활용되거나 해당 업무의 대상이 된 경우

5390.8 A5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의 직업, 법률, 규정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정한 조건, 정책 및 절차의 존재 여부(외부전문가가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에서 윤리기준 발행 책임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윤리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포함)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범위
- 외부전문가가 사용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의 존재 여부 및 적절성

5390.8 A6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의도된 목적에 맞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격이 있는 임직원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 소속 회계법인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음
- 외부전문가에게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예: 이해상충으로부터 업무를 분리하는 조치 실행)를 취하도록 요청함
- 외부전문가의 업무 중 위협을 초래하는 부분을 재조정하거나 다른 외부전문가에게 재배정함

#### 정보의 출처

5390.9 A1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다.

- 외부전문가가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 또는 경험
-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속가능성인증인 소속 회계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문의
-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 및 사업 활동 등 배경에 관해 외부전문가와 논의
- 외부전문가의 전문가 기구 또는 산업협회에 문의
- 외부전문가가 작성하고 공인된 출판사나 공인된 저널 또는 기타 매체에 게재된 기사, 논문 또는 저서
- 외부전문가와 관련된 소송절차 등 공개된 기록
- 외부전문가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회사 간의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에 관해 의뢰인 및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
- 지속가능성인증인 소속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 평가 시 추가 고려사항

5390.10 A1 외부전문가가 지속가능성인증인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려면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합리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제3자 테스트를 활용해야 한다.

5390.10 A2 외부전문가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미 수행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가 인증인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인증인은 윤리강령을 위반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70은 이러한 압력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데 있어 관련이 있다.

*동일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지속가능성 또는 기타 인증업무에 대한 추가 공정성 고려사항*

5390.11 A1 동일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지속가능성 또는 기타 인증업무에 활용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따라서 문단 R5390.12~R5390.19에서는 문단 R5390.8에 따라 그러한 업무에서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추가 조치를 제시한다.

공적법인이 아닌 동일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지속가능성 또는 기타 인증업무

**R5390.12**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 (B)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 (C) 인증보고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

- (a)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모든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 (b)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외부전문가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 (c)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간에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 중인 업무

**R5390.13**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 (b) 인증보고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간의 추가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

5390.13 A1 문단 R5390.13에 명시된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 외에도, 문단 R5390.14는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간의 다른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을 제시한다.

5390.13 A2 외부전문가로부터 추가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직업상 수행하는 실무의 규모
- 외부전문가가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
- 외부전문가가 해당 직종에 종사한 기간
- 외부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의 복잡성
-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외부전문가가 직업상 수행하는 실무의 규모가 클수록, 업무의 범위가 넓을수록, 또는 해당 직종에 종사한 기간이 길수록,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간의 추가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공적법인인 동일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지속가능성 또는 기타 인증업무

**R5390.14**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 (B)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 (C) 인증보고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

- (a)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모든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 (b)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에 제공한 모든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단, 해당 대출 또는 보증이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해당하는 경우)과 해당 회사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c) 회사가 은행 또는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단, 해당 대출 또는 보증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d) 회사가 은행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단, 해당 대출 또는 보증이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해당하는 경우)과 해당 회사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e)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또는 그 경영진 간의 모든 긴밀한 사업관계. 단,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해당하는 경우)과 회사 또는 그 경영진에게 그러한 재무적 이해관계(있는 경우)가 중요하지 않고 해당 사업관계가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f)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간에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업무

- (g)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거나 최근 받은 모든 보수나 성공보수, 또는 보수나 기타 유형의 보상에 대한 의존성
  - (h)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 또는 기타 혜택. 단, 해당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이 사소하고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 (i)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간의 모든 실제 또는 잠재적 소송
  - (j) 외부전문가가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현재 보유 중이거나 이전에 보유했던 모든 직위
  - (k) 외부전문가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 소속조직의 경영진이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의견이나 결론을 표명할 대상인 회사의 재무 또는 비재무 정보나 그러한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으로서 현재 보유 중이거나 이전에 보유했던 모든 직위
  - (l)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를 옹호한 이전의 모든 공개적 진술
  - (m) 외부전문가 소속조직의 지배주주(있는 경우)와 회사 간의 모든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의 성격과 범위
  - (n)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외부전문가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간 관계의 기간과 관련하여:
- (o) 관계가 지속된 기간

외부전문가팀과 관련한 고려사항 및 의뢰인이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의 고려사항  
동일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모든 지속가능성 또는 기타 인증업무

**R5390.15** 외부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경우 문단 R5390.12~R5390.14에 명시된 정보를 외부전문가팀의 모든 구성원이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해야 한다.

**R5390.16**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의뢰인이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 (B) 의뢰인과 관련하여
- (C) 인증보고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

- (a)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보유한 모든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 (b)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가질 수 있는 모든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 (c)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의뢰인 간에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업무

**R5390.17**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 (b) 인증보고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의뢰인 간의 추가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

5390.17 A1 문단 R5390.17에 명시된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 외에도, 문단 R5390.14는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의뢰인 간의 다른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을 제시한다.

5390.17 A2 외부전문가로부터 추가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직업상 수행하는 실무의 규모
- 외부전문가가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
- 외부전문가가 해당 직종에 종사한 기간
- 의뢰인이 공적법인인지 여부
- 의뢰인과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간 관계의 성격
-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 및 복잡성
- 외부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의 복잡성
-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외부전문가가 직업상 수행하는 실무의 규모가 클수록, 업무의 범위가 넓을수록, 또는 해당 직종에 종사한 기간이 길수록,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회사 간의 추가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5390.17 A3 업무 상황상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의뢰인에게 문의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의뢰인 간의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

5390.18 A1 해당하는 경우 문단 R5390.12~R5390.17에 따라 공개된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으로 인해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390.18 A2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문단 5390.8 A5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다음이 포함된다.

- 재무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가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해당하는 경우)에 중요한지 여부
- 재무적 이해관계로 인해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해당하는 경우)이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해당하는 경우)과 회사 또는 그 경영진 간 긴밀한 사업관계의 중요성 또는 유의성
-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거나 최근 받은 모든 보수의 유의성
- 외부전문가팀 내 개인의 역할
-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받은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의 성격 및 가치
- 소송의 중요성 또는 유의성 및 소송이 외부전문가가 회사에서 이전에 수행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회사를 떠난 이후의 기간
- 회사에서 외부전문가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 소속조직의 경영진이 보유한 직위
-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를 옹호한 공개적 진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옹호의 성격

5390.18 A3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외부전문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긴밀한 사업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청
- 관련된 개인을 외부전문가팀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
- 회사가 제공하는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을 거절할 것을 요청

5390.18 A4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문단 5390.8 A6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외부전문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남은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만큼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처리할 것을 요청
- 긴밀한 사업관계의 유의성을 줄일 것을 요청

-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의견이나 결론을 표명할 대상인 회사의 재무 또는 비재무 정보나 그러한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을 관련된 개인이 다루지 않도록, 해당 개인의 책임을 구조화할 것을 요청
-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요청

#### 새로운 정보 또는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 전체 전문서비스

**R5390.19** 새로운 정보 또는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외부전문가가 인증인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

**R5390.20**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인증보고기간부터 해당 보고서의 발행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단 R5390.5(b)(ii)에 따라 커뮤니케이션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인증인의 목적에 필요한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에 대한 결론

##### 전체 전문서비스

**R5390.2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 (a)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적격성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b) 외부전문가가 인증인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 (c)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없는,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390.21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적격성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법규상의 비밀유지 제한으로 인해 문단 R5390.12~R5390.17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외부전문가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나 소속조직에 관해 문단 R5390.12~R5390.17에서 요청하는 특정 정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가 이러한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390.21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이러한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인증인의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며, 이는 안전장치의 적용으로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

### 전체 전문서비스

5390.22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가 인증인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만족스럽게 결론을 내린 경우에도,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함에 따른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 위협의 식별

5390.23 A1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에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및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이기적위협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의 결론 및 발견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복수의 외부전문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부당한 의존을 하는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평가할 시간 또는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

(b) 자기검토위협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이전에 인증인이 수행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제공한 판단에 의존하는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c) 변호위협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결론에 대한 알려진 편견을 가진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도모하는 경우

(d) 유착위협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와 긴밀한 친분 관계에 있는 경우

(e) 압력위협

- 외부전문가의 권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도록 압력을 받는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내부 또는 외부의 목표 및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특정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도록 압력을 받는 경우

### 위협의 평가

5390.24 A1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목적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서비스의 성격
-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감독
- 외부전문가가 사용하는 자료, 가정 및 기타 투입자료, 방법의 적절성 및 투명성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 그리고 해당 업무가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의 능력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기술적 업무수행 기준이나 기타 직업적 관행 또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관행 또는 법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둘 이상의 당사자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중요하게 상이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의 결론 또는 발견사항 등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와 기타 정보의 일관성
- 외부전문가의 접근방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료검토 학술 연구 등 기타 증거의 가용성
-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 또는 비용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인증인 소속 회계법인이 외부전문가의 결론 또는 발견사항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여부

### 위협에 대한 대처

5390.25 A1 유착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다른 외부전문가를 식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5390.25 A2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격이 있는 임직원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 소속 회계법인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추가 투입자료를 확보하거나,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의도된 목적에 적절한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다른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재수행함
- 업무 완료를 위한 추가 시간 또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합의함

## 기타 사항

### *신규 분야 또는 영역의 외부전문가*

5390.26 A1 신규 분야 또는 영역의 전문성은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분야에는 다수의 전문영역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분야 또는 영역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5390.26 A2 문단 5390.6 A2에 제시된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평가와 관련된 일부 요소에 대한 정보가 신규 분야 또는 영역에서는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전문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없거나, 전문직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신규 분야에 전문기관이 설립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신규 분야와 유사한 분야 또는 기존 분야에서의 외부전문가의 경험이 신규 분야에서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5390.27 A1 적절한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다음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부전문가의 활용 목적 및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
- 전문서비스 수행에서 인증인과 외부전문가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증인의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과 그 대처 방법

### *문서화*

**R5390.28**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하는 경우 문단 R5390.12~R5390.17에 명시된 정보를 외부전문가로부터 서면으로 얻어야 한다.

5390.29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증인이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 결과로 도출된 결론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함에 있어 인증인이 식별한 중요한 위협 및 해당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
- 외부전문가와 모든 중요한 논의의 결과

## 용어정의

참고: 용어정의는 국제지속가능성인증 윤리기준(독립성 포함)(IESSA) 및 지속가능성인증/보고와 관련된 윤리기준의 기타 개정사항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므로, 최종 공표된 해당 기준과 함께 읽어야 한다.

## 새로운 용어정의

전문가	공인회계사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적격성 이외의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개인. 적합한 경우, 이 용어는 개인이 소속된 조직도 지칭함.
전문성	특정 분야의 기술, 지식 및 경험.

...

## 개정된 용어정의(변경 전·후 내용 포함)

외부전문가	<p>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의 소속조직이나 회계법인,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과 계약을 체결한 전문가.</p> <p><i>감사업무의 맥락에서, 회계와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기술,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파트너, 전문 스태프 또는 임시 스태프가 아닌) 전문가개인 또는 조직. 공인회계사가 해당 분야에서 이들의 업무를 활용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받음.</i></p> <p><i>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포함한 기타 인증업무의 맥락에서, 인증회계와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기술,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업무수행리더, 파트너, 전문 스태프 또는 임시 스태프가 아닌) 전문가개인 또는 조직. 공인회계사과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해당 분야에서 이들의 업무를 활용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받음.</i></p> <p><i>감사 및 기타 인증업무의 맥락에서, 외부전문가는 업무팀, 감사업무팀, 검토업무팀, 인증업무팀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의 일원이 아님.</i></p> <p><i>290, 390, 5390은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을 다루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함.</i></p>
-------	---

## 타 기준의 개정(변경 전·후 내용 포함)

### 제1부 – 윤리기준의 준수, 윤리강령 및 개념체계

120

#### 개념체계

...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120.5 A5 공인회계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경우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인회계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본인의 전문성과 경험이 결론을 도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관련 전문성 또는 경험을 보유한 다른 당사자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본인의 선입견 또는 편견이 전문가적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

### 제2부 – 비개업공인회계사

230

#### 충분한 전문성의 보유

...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R230.3 공인회계사는 보유한 전문성이나 경험의 수준에 대해 소속조직을 의도적으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

...

[280은 2025년 6월 30일 이후 시작되는 세무계획 수립 활동에 적용되며 문단 270.4 A1 뒤에 추가된다.]

## 280

### 세무계획 수립 활동

...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 세무계획 수립 활동과 관련된 공인회계사의 공익적 역할

280.4 A1 공인회계사는 소속조직이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면서 세무계획 수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세무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인회계사는 국가의 세무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공익에 부합한다.

280.4 A2 소속조직은 세무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관련 사안을 구조화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소속조직은 관련 세법 및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소속조직이 세무계획 수립 목표를 달성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돕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에 세법 및 규정에서 금지하지는 않지만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한 조세최소화 약정이 포함될 수 있다.

...

#### 세무계획 수립 활동 수행으로 인한 잠재적 위협

...

280.19 A2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기초 사업거래 또는 상황과 관련한 투명성 정도(해당하는 경우 최종 수혜자의 신원 포함)
-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기초 사업거래 또는 상황에 근거한 명확한 경제적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기초 사업거래 또는 상황의 성격과 복잡성
- 관련 세법 및 규정의 복잡성 또는 명확성
- 공인회계사가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관련 조세입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관여하는 국가의 수 및 해당 국가의 세무제도의 성격
- 관련 세무 분야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및 경험의 정도
- 잠재적 세금 절감의 중요성

- 약정 개발을 위해 공인회계사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성격 및 중요성
-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관련 세무당국이 이익을 제기하지 않은 기존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음을 공인회계사가 인지하고 있는 정도
- 공인회계사에게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지 여부
- 세무계획 수립 약정 이행의 긴급성 정도
-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다수의 의뢰인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소속조직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변형된 부분이 거의 없는지 여부
- 소속조직의 조직문화

...

[380은 2025년 6월 30일 이후 시작되는 세무계획 수립 활동에 적용되며 문단 360.40 A1 뒤에 추가된다.]

### 380

#### 세무계획 수립 업무

#### 개요

...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 세무계획 수립 업무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의 공익적 역할

380.4 A1 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이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면서 세무계획 수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세무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인회계사는 국가의 세무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공익에 부합한다.

380.4 A2 의뢰인은 세무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관련 사안을 구조화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의뢰인은 관련 세법 및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의뢰인이 세무계획 수립 목표를 달성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돕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에 세법 및 규정에서 금지하지는 않지만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한 조세최소화 약정이 포함될 수 있다.

...

#### 세무계획 수립 업무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협

...

380.19 A2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의뢰인의 투명성 정도(해당하는 경우 최종 수혜자의 신원 포함)

-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기초 사업거래 또는 상황에 근거한 명확한 경제적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기초 사업거래 또는 상황의 성격과 복잡성
- 관련 세법 및 규정의 복잡성 또는 명확성
- 공인회계사가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관련 조세입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관여하는 국가의 수 및 해당 국가의 세무제도의 성격
- 관련 세무 분야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및 경험의 정도
- 잠재적 세금 절감의 중요성
- 세무계획 수립 업무의 성격과 보수 금액
-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관련 세무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기존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음을 공인회계사가 인지하고 있는 정도
- 의뢰인이나 타 당사자가 공인회계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여부
- 세무계획 수립 약정 이행의 긴급성 정도
-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다수의 의뢰인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변형된 부분이 거의 없는지 여부
- 조직문화를 포함하여, 의뢰인의 알려진 이전의 행위 또는 평판

380.19 A3 이러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의뢰인을 해당 의뢰인에게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 소속 회계법인 외부의 전문가에게 소개함
- 의뢰인에게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관련 세무당국의 기존의 해석 또는 통칙과 일치하게 구조화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함
- 가능한 경우 관련 세무당국 또는 기타 당국으로부터 사전답변(advance ruling)을 받음
- 의뢰인에게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추진하지 않도록 조언함

...

## 제4A부 – 감사 및 검토업무의 독립성

### 600

#### 감사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 제공

##### 개요

...

600.2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비인증업무를 감사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감사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 및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 제4B부 – 감사 및 검토업무 외의 인증업무에 대한 독립성

### 950

####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 제공

##### 개요

...

950.2 회계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비인증업무를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인증의뢰인에게 특정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 및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 시행일

- 제2부의 조항은 2026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 제3부의 조항은 다음에 대해 시행된다.
  - 2026년 12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기간, 또는 2026년 12월 15일 이후의 특정 날짜에 이루어진 감사업무, 검토업무 및 제5부의 범위 외 기타 인증업무에 대해 시행됨
  - 2026년 12월 15일부터 기타 전문서비스에 대해 시행됨
- 제5부의 조항은 2026년 12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기간, 또는 2026년 12월 15일 이후의 특정 날짜에 이루어진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해 시행된다.

조기 도입은 허용되며 권장된다.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including International Independence Standards)*, Exposure Drafts, Consultation Papers, and other IESBA publications are copyright of IFAC.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thics and Audit™ (IFEATM), the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IESBA®) and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The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including International Independence Standards)*',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 (including International Independence Standards)*', 'non-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ESBA', 'IFAC', 'IESSA', 'NOCLAR' and the IESBA logo are trademarks of IFAC, or registered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f IFAC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thics and Audit' and 'IFEATM' are trademarks of IFEA, or registered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f IFEA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AN IFEA BOARD

COPYRIGHT OF:



**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